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0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고령군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연 월 일	2020. . .

고령군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2020. 02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민간위탁 사무명 및 사무내용

- 사 무 명 :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
- 사무내용 : 각종 프로그램 운영, 카페休운영지원, 다끼골음악회 등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근 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,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
- 필요성: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제공,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복잡한 수요에 신속 대처,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도모 등

3. 민간위탁 시설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등)

- 소재지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1 외 2
- 규모 및 지원시설
 - 행정복합타운 3, 4층: 연면적 1,659㎡(프로그램실, 정보화실 등)
 - 다산배움관(구)면사무소: 연면적 648㎡(노인인문학프로그램실 등)
 - 행복나눔센터(구)보건소: 연면적 338㎡(무료급식소, 요리교실 등)

4. 민간위탁기간

○ 3년

5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을 통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
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구분	소요예산 (천원)	산출근거	비고
계	129,492		
인건비	65,222	· 기본급68,800원 * 21일 * 3명 * 12개월 = 52,012,800원 · 주휴수당 68,800원 * 3명 * 52일 = 10,732,800원 · 연차수당 68,800원 * 3명 * 12개월 = 2,476,800원	프로그램관리, 휴카페, 청소
강사료	40,000	· 강사료 500,000원 * 8월 * 10강좌 = 40,000,000원	
운영비	5,850	· 물품구입 150,000원 * 15종 = 2,250,000원 · 프로그램 운영 300,000원 * 12월 = 3,600,000원	
다끼골음악회	15,000	· 15,000,000원 * 1식 = 15,000,000원	
자치활동실비	1,920	· 8,000원 * 20명 * 12월 = 1,920,000원	
선진지견학	1,500	· 1,500,000원 * 1회 = 1,500,000원	

7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다산면 주민자치센터는 관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,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지방분권 및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, 주민들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문적·지속적 운영이 필요함

○ 경제적 효율성

- 민간위탁 운영 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관의 직접운영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
-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직접 고용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소 감축 가능
- 주민자치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및 고유 행정업무집중도 제고 가능

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민간위탁 운영 시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 프로그램 제공의 전문화 및 효율성 기대

○ 성과 측정 용이성

- 프로그램 운영 횟수, 이용자 수, 이용만족도 등 계량적 성과 측정용이

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위·수탁 협약에 의해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「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해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

8. 기타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다산면 주민들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편의성, 적법성, 공공성, 효율성

-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이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사무 개념에 부합

※ 법적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
-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-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
관련법령

<지방자치법 >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관련법령

<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설치 및 관리조례>

제6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4. 체육·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<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>

제7조(운영)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·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21.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(054) 950-6073